

■입소자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효사랑실버타운의 입소정원은 43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할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소대상)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3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3. 4~5등급 시설급여 받은자 입소 가능하고, 비용은 3등급 수급자와 같다.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감염병 진단서)
6. 신체제재동의서

② 입소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입소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연1회 이상)
3.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급여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여, 입소자(보호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약하는 등 입소자(보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장기요양 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급여이용계약서에 정확히 명기하고, 계약 만료일전 계약 연자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를 재작성(재계약) 하도록 한다.

④ 계약서 /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간인으로 발부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입소보증금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 본 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소보증금의 반환도 없다.

⑥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한다. 입소 이용료는 운영규정에는 명기하지 않고, 서비스이용계약 당시 급여이용계약서와 표준약관에 명기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액을 합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히 명기하도록 한다.

2. 일반 수급자의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비율은 20%이며, 기초수급권자는 0%이다.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저소득층)는 12%또는 8%의 본인일부부담 비율이 발생한다.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해 입소이용료를 산정한다.

3.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시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는 불가하다.

4. 본 시설은 주·부식비를 포함한 식사재료비를 1식 2,500원으로 산정하여 제공된 식사량 만큼 청구하도록 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식재료비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관계자간 협의를 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한다. 그 외 의료(진료·약제비) 청구가 있을 수 있다.

5. 매월 10일 전 전월 급여이용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의 (청구)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배부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발급은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납부 영수증에 같음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는 법정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명기하고, 명세서 발급과 동시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유·무선으로 납부할 비용에 대해 안내를 하고,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추후 시설 방문시 직접 제공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를 하도록 한다. 이용료나 급여이용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본을 제공한다. (별지 사용 가능)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간호)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설은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실비를 청구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종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 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본 시설은 특별침실 이용에 대해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 하지 않지만,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⑫ 계약의 해제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⑬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하고, 연계기록지 발급 대장에 기록한다.